

2023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귀하
0438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전자우편: president@president.go.kr

참조.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팩스: +82 44 200 2144

박진 외교부장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팩스: +82 2 2100 7934 / 7965 / 7967

권영세 통일부장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팩스: +82 2 2100 2319 / 2379

한동훈 법무부장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팩스: +82 2 2110 0351 / 3113

내용: 1953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에서 국군포로, 피랍자 및 억류자, 그리고 탈북민 관련 표현의 강화

윤석열 대통령께

지난 70년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여 약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53년 이후로도 북한은 베트남전과 1970년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1955년부터 1987년 사이에 60건이 넘는 어선 나포와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최소 516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최소 6명의 한국 시민(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을 억류 중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임하여 우리는 귀하가 오는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유럽연합(EU)가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북한인권 결의에서 국군포로, 피랍자 및 억류자, 그리고 탈북민 관련 표현을 강화함으로써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성명에서 귀하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주목합니다.¹

뒤이어 2022년 12월 9일 유엔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시민, 일본 및 대한민국 시민의 납치와 강제실종, 북한에 자의에 반하여 붙잡혀 있는 다른 국적자들, 미송환 전쟁포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억류자, 피랍자, 실종자에 관한 모든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고 이들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국 포함 31개국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²

최근 2023년 4월 26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피랍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³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은 2022년 5월 23일⁴ 및 2023년 1월 13일⁵ 일본과의 정상 공동성명에서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유엔 총회에서 작년 EU가 제안했고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북한인권 결의(2022년 12월 15일 결의 77/226)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호소합니다.

前文 문단 24의 국군포로 관련 표현(“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침해 의혹에 우려를 표하며”)은 “계속되는”을 “계속되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의 계속되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하의 송환권 거부 및”으로 하고, “의혹에”를 “의혹, 특히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및 가족의 강제 분리”로 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억류자 6인(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 관련해서는 현재 알려진 북한내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한국 출신인 점을 감안하여 본문 문단 18(h)에서 사용된 표현(“북한에 억류된 타국 시민에게 보호를 제공”) 중 “타국 시민”을 “타국, 특히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체함으로써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본문 문단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 영토 내외에서 타국 시민에게 자행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및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 및 유린 보고 관련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다”)도 마찬가지로 “타국 시민”을 “타국, 특히 일본과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체함으로써 외국인 구금자 및 피랍자의 국적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이 유엔 총회의 다른 특정 국가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들에 비추어 알려진 한국인 억류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작년 12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권상황에 관한 총회 결의 77/228호는 “마흐사 아미니의 자의적 구금과 뒤이은

¹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2022.1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11>

² Joint Statement Delivered by Ambassador Linda Thomas-Greenfield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9, 2022),

<https://usun.usmission.gov/joint-statement-delivered-by-ambassador-linda-thomas-greenfield-on-the-human-rights-situation-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³ [전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3.04.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6>

⁴ Japan-U.S. Joint Leaders’ Statement: Strengthening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May 23,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japan-u-s-joint-leaders-statement-strengthening-the-free-and-open-international-order>

⁵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anuary 13,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1/13/joint-statement-of-the-united-states-and-japan>

구류 중 사망”을 언급하였으며, 일시 점령 중인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 인권상황에 관한 총회 결의 77/229호는 “러시아 연방의 ... 에미르-우세인 쿠쿠, 할리나 도브호폴라, 세르베르 무스타파예프, 블라디슬라브 예시펜코, 나리만 젤알, 이리나 다닐로비치, 보호단 지자, 엔베르 크로쉬, 빌렌 테네리아노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체포 및 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 인권상황에 관한 총회 결의 77/230호 또한 인도적 구호 직원과 의료 업무 종사자, 그들의 교통수단과 장비, 병원과 다른 의료 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그 사례로 “2021년 3월 21일 공간분리된 아타리브 동굴 병원에 대한 공격 및 2021년 6월 12일 알시파 병원에 대한 테러 공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2020년 1월 이후 시행 중인 코로나 국경봉쇄 해제시 재중 탈북 난민의 강제송환이라는 긴박한 위험을 감안하여 우리는 본문 문단 2(a)(v)의 표현이 “젠더 및 인종에 근거한 송환된 산모와 그 자녀에 대한 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를 송환된 북한 사람들이 겪는 보복 중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들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하의 불송환 의무도 이행할 것을 촉구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징적이지만 이들 수정 제안은 실현된다면 국군포로, 피랍자 및 억류자, 그리고 탈북민과 그 가족에게 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인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에게도 국제 사회가 이들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진행형인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잊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울러 한국은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 맥락에서 귀 정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EU와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는 공동 주요 제안국이 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들이 이전 북한인권 결의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해왔듯이 귀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 실현의 일환으로 추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전에 탈북민과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및 북한인권 단체와 사전 협의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3년 6월 22일 기준)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C)

한보이스

휴먼아시아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세이브 NK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